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 신규지구 추가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지구 추가지정(안)을 2025년 9월 22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산업통상부 장관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산188번지 일원
- 면적 : 1,661,045㎡

< (참고) 경기경제자유구역 전체 사업지구 >

사 업 지 구	위 치	면적(천㎡)
평택포승(BIX) 지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일원	2,046
현덕지구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2,316
시흥배곧지구	시흥시 배곧동 일원	878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1,661
소 계		6,901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

- 글로벌 R&D 기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 조성

3.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

- 안산시, 학교법인 한양학원(한양대학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방식에 공영 및 민간 개발방식
- 개발기간 : 2026년 ~ 2032년

5.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 410,459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용지비	공사비	조사설계비	기타비용
금액	410,459	279,229	22,089	8,376	100,765
비율	100%	68.0	5.4	2.0	24.5

- 재원별 사업비

(단위 : 억원)

구분	재원	총사업비	기 투자	계획금액('25~)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소 계	4,105	3,592	513
	국 비	58.5	0	58.5
	지방비(도)	58.5	0	58.5
	지방비(시)	3,988	3,592	396

- 재원조달방법

-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조성사업비는 4,10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3,592억원이 기투자되었고, 513억원은 신규투자 계획으로 국비(11.4%), 지방비(도)(11.4%), 지방비(시)(77.2%)로 조달(국비는 향후 협의, 지원 불가 시 지방비(시)로 조달)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기본방향

- 공간별 특화 및 연계성 부여, 경제자유구역의 위상 제고, 친환경적 경관 및 공간 창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토지이용계획

- 사업지구의 기능을 고려하여 산업시설용지 11.9%, 연구시설용지 17.7%, 복합용지 7.7%, 업무시설용지 0.2%, 공공시설용지 62.5%로 구성
(단위 : m²)

구 분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비율(%)
합 계	1,661,045	100.0
산업시설용지	197,447	11.9
연구시설용지	293,895	17.7
복합용지	127,593	7.7
업무시설용지	3,347	0.2
공공시설용지	1,038,763	62.5

○ 주요 기반시설계획

- (상수공급계획) 반월정수장 급수구역(Q=190,000m³/일)으로 고잔배수지(V=25,000m³)을 통하여 배수관로(D400)에서 분기하여 공급

급수량(m ³ /일)		
생활용수	공업용수	합계
794	488	1,282

- (우수처리계획)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본 사업지구는 일동배수구역으로 사업지구 내 발생우수는 시화호로 우수배제
- (오수처리계획) 본 사업지구의 발생 오·폐수량(Q=1,253m³/일)은 기매설되어있는 오수간선관로에 연결하여 안산공공하수처리장(Q=534,000m³/일)에서 처리토록 계획

오폐수 발생량(m ³ /일)		
생활오수	공장폐수	합계
765	488	1,253

- (전력공급계획) 용지별 특성에 따라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면적(공공시설용지) 기준으로 전력수요량을 산출하여 전력공급

변압기설비용량(kVA)	최대부하(kW)
67,193	60,474

- (에너지 공급계획) 수요량에 따라 도시가스(LNG) 공급, 집단에너지 도입 검토결과 최대열부하 미달로 도입 타당성 없음

구분	난방면적(m ²)	열수요량(Gcal/년)			최대열부하(Gcal/h)		
		난방	급탕	계	난방	급탕	최대
합계	1,035,938	187,145	10,268	197,413	71.00	5.19	71.00

- (정보통신 공급계획) 사업지구 외곽의 간선 및 지선으로부터 인입 공급, 사업지구 내 통신수요량은 5,551회선, 계획시설용량 6,011회선
-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공급처리시설 지중화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과 효율적 관리 및 지상 부지의 활용 증대 도모,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지하매설물 설치
- (주요 유치시설 계획) 첨단로봇·제조 중심의 R&D·업무·산업시설·복합 상업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분야별 복합시설 유치
- (문화·공원·녹지계획) 안산시 관내 문화시설 활용, 지구 내 한양대 ERICA 및 사유지 활용하여 공원·녹지 조성

문화시설	문화재	공연시설	박물관	미술관	지역축제
	61	2	12	6	6
공원·녹지	개발면적(m ²)	공원·녹지면적(m ²)			구성비(%)
		소 계	공 원	녹 지	
	1,661,045	64,408	17,023	47,385	3.9

-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단기적으로 기 조성 시설 이용, 향후 지구 내 종합병원 유치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인구수용계획

- 용지별 유치업종 분류에 따라 원단위를 산정하여 신규 유발인구 10,126명 추정

- 배후개발지역과 연계된 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주거지 및 송산시티 등 배후 주거지로 인구 분배

○ 주거시설 조성계획

- 사업지 인접 사동89블록,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구) 부지에 주거시설 조성 예정, 기조성된 사동90블록 등 대규모 주거단지와 주거시설 조성 예정부지를 거주시설로 활용

8. 교통처리계획

- 동선계획 시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세에 순응하는 선형을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
- 동선체계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등 위계별로 구성
-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외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최적 처리방안 계획

구 분		내 용
지구내 가로망 체계	주간선도로	기존 지방도 84호선과 연계를 통한 사업지 외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도모
	보조간선도로	내부 도로망을 주간선도로에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계획
	집산도로	교통량 집산을 통한 보조간선도로에 연계토록 계획
녹색교통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별 연계성,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을 고려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
주차장		지원 및 복합시설 내 주차장 활용 및 노외주차장 추가 계획

9.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핵심전략산업(첨단로봇·제조)과 연구개발(R&D) 투자기업 발굴
- 국내·외 맞춤형 IR 추진 및 투자유치 전담 조직 구성
- 외국인 투자기업에 산업, 연구용지 공급 우대 및 수요자 중심의 용지공급 방식 운영

- 관련 법령 및 경기도·안산시 조례 등에 근거한 세제·입지·현금·경영 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계획

- 배후지역의 주거용지 활용, 배후지역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교육기관 등 특별공급 추진
- 신안산선(한양대역)과 거주시설을 인접시켜 광역교통의 편리성 제공
- 단기적으로 지역 내 기존 종합병원(5개소) 및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 (13개소) 활용, 장기적으로 부지 내 종합병원 건립 계획 추진 중
- 안산시 관내 및 지구 내 한양대 ERICA 시설 등 문화·체육시설 활용, 인근에 조성중인 사동공원 및 세계정원가든 등 공원·녹지 확보
- 사업지구 내 국제학교 유치 및 외국인 전용 유아보육시설 조성 지원, 안산시 내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 중

10. 환경보전계획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추어진 환경계획을 추진
- 공원·하천·연안 등을 연계하여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태계 보전 및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이용·관리 계획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에 입각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도모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처리 시 타 법령에 따라 기 결정·승인·인가된 사항을 준용함

12. 지정지역 평택포승(BIX), 현덕지구, 시흥배곧의 1~11의 항목의 개발 계획은 변경 없음

13. 관련도서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e음에서 (<https://www.eum.go.kr>) 열람 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031-8008-8619), 안산시 철도 건설교통국 철도경제자유과(031-481-2190)에서 열람 가능